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출 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 추가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 이전 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 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 설 ·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 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 · 이전 · 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 · 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 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